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기본 모형(案)

교육인적자원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

도입배경

도래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와 고학력 사회에 대처하고 21세기 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양질의 의사,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적 소양과 자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4년간의 의·치의학교육 기본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

• 현 법체계에 의하여 전문직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의사양성 관련 법규 : ①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②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동 시행령 ③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④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⑤의료법 및 동 시행령 ⑥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 의사·치과의사 양성을 위한 기본 고등교육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함.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은 국내 41개 의과대학과 11개 치과대학에 적용하며,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개편 여건이 성숙한 대학부터 2003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함.

• 2003학년도에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학교의 학생선발(전문대학원 1학년)은 2005학년도부터이며, 2006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대학의 학생선발은 2008학년도부터가 됨.

•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개편 여건이 성숙한 대학이란 전문대학원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교수,

시설·설비 및 행정·재정적 여건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설립준칙' 및 '인정평가 기준 (위 규정은 현 단계에서는 강제성이 있는 법규가 아님)' 등이 참고될 수 있음.

학교명칭

각 전문대학원의 명칭은 대학자율로 함.

지원자격

전문대학원 입학지원의 최저 자격기준은 대학 학부 전공에 관계없이 의학(치의학)교육입문시험(Medical(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로서, 대학 학부교육을 2년 이상 이수하고 90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함. 각각의 대학별 지원자격에 관한 사항(선수과목, 평량평균, 외국어 기타 등등)은 대학자율로 함.

• 지원자격을 '대학 학부교육 2년 이상 이수하고 90학점 이상 취득한자(의예과·의예학부/치의예과·치의예학부 포함)'로 한다는 것은 동일대학의 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타 대학의 전문대학원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함. 단, 전문대학원 학생을 동일대학 학생 가운데에서 선발할 것인지, 타대학 출신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지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자율로 함.

입학심사

각 전문대학원의 입학심사는 상기의 최소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대학이 자율로 입학심사를 함.

의예과/의예학부(치의예과/치의예학부)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각 대학교는 전공광역화 개념의 의예학부(치의예학부)를 설치할 수도 있고, 현재의 의예과(치의예과) 체제를 존속시킬 수도 있으나, 그 결정은 해당 대학의 자율에 의함.

-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중 동일 대학교 내의 의예과/의예학부(치의예과/치의예학부)로 부터 선발하는 학생의 점유율을 추후 결정함.

- 의예(치의예)학부란 각 대학교의 실정에 따라 현재의 의예과를 의예(치의예)학부로 개편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을 의미함.

- 의예과/의예학부(치의예과/치의예학부) 수료생이 동일 대학교의 해당 전문대학원에 입학이 자동 허가되는 폐쇄적 입학제도는 폐지한다는 의미임.

입학정원

각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1학년 입학정원은 현재의 의·치의예과 1학년 입학정원 승계를 원칙으로 함.

-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의한 대학교의 총 정원규제에는 변동이 없음을 원칙으로 함.

입문시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의 의·치 의학을 수학할 수 있는 기본지식 및 국민의료에 위한 적성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의학(치의학) 교육입문시험(Medical(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입학 지원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의학(치의학) 교육입문시험은 대학교육의 이수연한, 취득 학점 및 학부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의학(치의학) 교육입문시험이 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유도하거나 입학사정 기준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대학의 학부교육이 의학(치의학) 교육입문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의학(치의학) 교육입문시험 결과의 활용(반영비율,

가중치부여 등)은 대학자율로 하기로 함.

의학교육입문시험은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연도를 고려할 경우에 최소한 2004년 6월까지의 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등과 같은 민간기구에서 준비, 집행하도록 함.

교육과정

해당 전문대학원의 모든 교과목은 타학문 전공자도 이수할 수 있으나, 해당 전문대학원의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질 향상 및 전문대학원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서 가칭 '제1단계 : 임상교육 입문시험', '제2단계 : 임상교육 종합평가시험', '특성화 선택과정' 및 'Subintern'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임상교육 입문시험', '임상교육 종합평가시험', '특성화 선택과정' 및 'Subintern' 제도 등은 전문대학원 수준에 적합한 교육의 충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로 요청되는 것임(전국적 일률 시행/학교별 자율 시행). 또한 학사학위 취득없이 전문대학원에 진학한다는 점, 석사학위 논문에 부응하는 제도의 구비 및 외국대학 졸업자(IMG)에 대한 여과장치 등 복합적인 의미에서 필요한 것임.

- 현 단계에서는 이것이 면허시험의 다단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면허시험과의 관계는 타기관의 연구에서 추후 검토하기로 함.

- 전문대학원의 모든 교과목은 타학문 전공의 학생들에게도 개방형으로 운영할 수 있되, 의학(치의학) 교육입문시험 응시경력으로 해당 전문대학원에 입학허가 된 자만이 임상교육 제1단계 응시할 수 있으며, 제1단계 합격자만이 제2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함.

수여학위

전문대학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학위인 의학 석사(M.D)/치의학(D.M.D) 석사학위를 수여함.

학문연구 복합학위과정

21세기 생명과학 영재양성을 위한 복합학위과정

(M.D.-Ph.D./D.M.D-Ph.D. 과정 : 또는 전문학위와 학술학위 병행과정에 해당하며 기본적인 재학기간은 6년으로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해당 전문대학원 1학년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정원 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하되, 이 과정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적용하며, 학교 또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원칙으로 함.

전문대학원 도입 기준

기존 의·치과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때는 교육과정, 교수, 시설·설비, 행정·재정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일정한 전환기준을 제시하기로 하며, 전환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설립준칙' 및 '인정평가 기준(이상 두 개의 규정은 현 단계에서는 강제성이 있는 법규가 아님)'을 준용하여 개발하기로 함.

면허시험

면허시험의 다단계 및 면허 부여시기는 보건복지부와 타기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학위와 면허의 개념을 구분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검토하지 않음

• 단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중에서의 제1단계 및 제2단계 시험은 현 단일 면허시험에 대한 대체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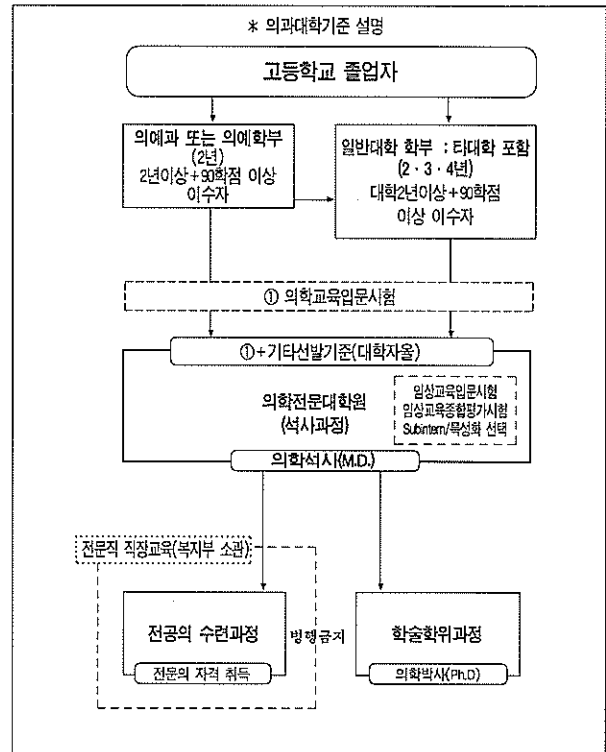
졸업후 교육과정

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학술박사학위(Ph.D.) 과정의 정상화와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졸업후 수련교육(전공의 과정)과 학술학위과정을 병행 이수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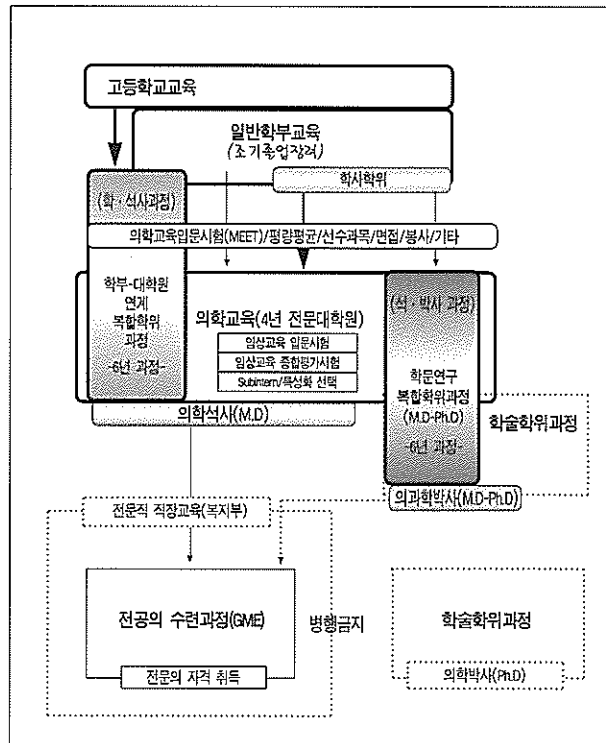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는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술박사학위과정을 대학자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여기서 대학자율이라는 의미는 각각의 학위과정 개설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임.

이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기본 모형에 대한 교육인적 자원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에서 연구개발 중에 있는 연구시안의 내용임을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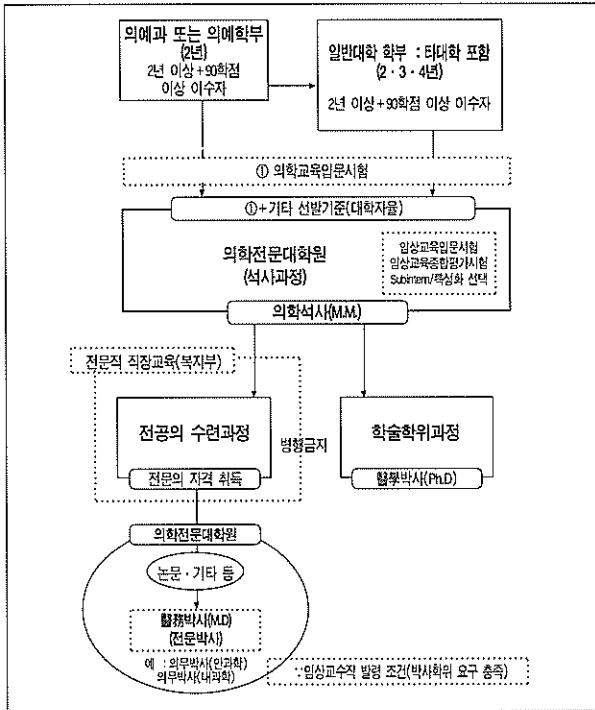
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추진 기본 모형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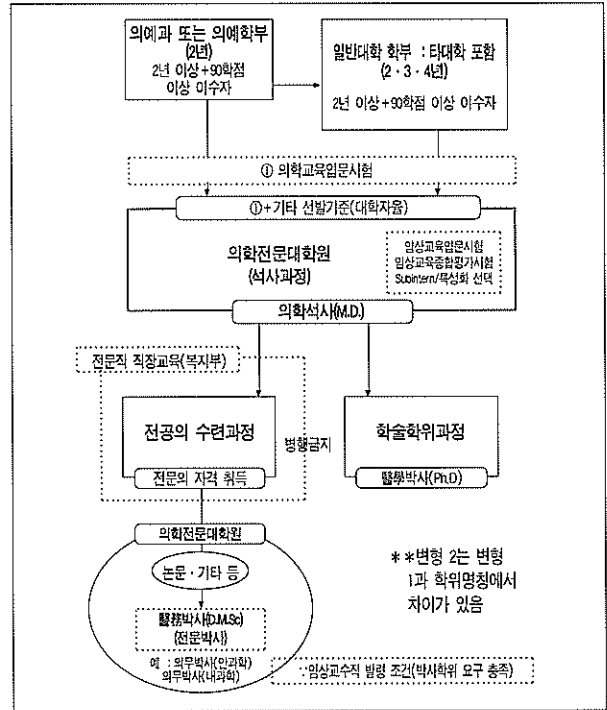
기본모형의 논리적 개념도



의학전문대학원 추진 기본 모형 변형-1



의학전문대학원 추진 기본 모형 변형-2



- 전문대학원 추진경과 -

- 1993. 2~8 : 교육부 : 대학원제도 개선 시행 방안 연구
- 1994. 11. 10 : 교육부 : 대학교육개혁방안 토론회
- 1995. 5 31 :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I)
- 1995. 6. 23 :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 의과대학의 학제 및 학위제도 (제 29회 의학교육세미나)
- 1995. 8. 8 : 교육부 : 대학원제도 개선 방안 수립
- 1996. 2. 9 :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II)
- 1996. 5. 27 :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 의과대학 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교육, 연구의 활성화(제30회 의학교육세미나)
- 1996. 8~1997. 2 : 교육부 :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연구 (연구책임자, 한달선)
- 1996. 9. 28 : 한국의학교육협의회 : 의학교육 학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 1996. 10. 9 : 한국의학교육협의회 : 의학교육 학제 개선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I)
- 1997. 2. 18 : 교육부 : 의학교육 학제 개선에 대한 토론회
- 1997. 5. 12 :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 의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 1997. 6. 23 : 한국의학교육협의회 : 의학교육 학제 개선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II)
- 1998. 6. 17 : 교육부 : 연구중심대학 육성 국책과제 추진계획(안) 발표

- 1998. 7. 16 : 한국의학교육협의회·대한의사협회 : 의학교육 학제에 관한 확대 간담회
- 1998. 11~1999. 6 : 새교육공동체위원회 : 학사후 의학교육제도 모형개발 및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대통령 보고서 I)
- 1998. 11. 27 :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한국의학교육학회 : 세계 여러 나라의 의학교육학제와 의학전문대학원 (제 6차 의학교육 합동학술대회)
- 1999. 1 : 한국의학교육협의회 : 의과대학 학제 개선 방안 연구 : 최근 의과대학 학제 논의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
- 1999. 5. 14 : 새교육공동체위원회. 학사후 의학교육제도 모형 개발 및 실행방안 공청회
- 1999. 6 : 한국의학교육협의회 : 의학교육 학제 개선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III)
- 2000. 7. 11 : 새교육공동체위원회 : 지식기반사회의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보고서 (대통령보고 II)
- 2000. 10. 17 : 교육부. 의·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추진계획(안) 발표
-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의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
- 2001. 3. 24 ~ 현재 : 교육인적자원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 구성
- 2001. 5 : 교육인적자원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추진 기본 모형에 대한 의견 수립
- 2001. 6. 2 : 교육인적자원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 의학 전문대학원 추진 기본 모형에 대한 공청회